#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1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이훈기・김정호・김성환

김용만ㆍ이병진ㆍ김 현

민병덕 • 문진석 • 용혜인

김태선 · 허종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.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.

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,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 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품질보증계획서"를 "품질보증계획서, 안전 관련 주요품목의 재고관리계획서"로 한다.

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정성평가는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재고관리 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제6호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3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재고관리에 관한 조치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재고관리)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

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·시설·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2제2항 중 "품질보증계획서"를 "품질보증계획서,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재고관리계획서"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11호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3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"를 "제23조·제25조·제26조·제26조의2·제27조 및 제28조"로 한다.

제118조제1호 중 "제23조제2항"을 "제23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26조의2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 반하여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재고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0조(운영허가) ① (생 략) 제20조(운영허가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(2) ----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 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 술지침서, 최종안전성분석보고 서. 사고관리계획서(중대사고관 리계획을 포함한다), 운전에 관 한 품질보증계획서, 방사선환경 --품질보증계획서, 안전 관련 영향평가서(제10조제2항에 따 주요 품목의 재고관리계획서--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),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(제10조제2항에 따 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 진 부분만 해당한다),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[부지별, 기간별, 핵 종군(核種群)별 배출총량을 포 함한다]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 략)
제23조(주기적 안전성평가) ①
(생 략)
<<u>신 설></u>

#### ② · ③ (생 략)

- 제24조(운영허가의 취소 등)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,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6. 제22조제2항 · 제23조제2항 · 제27조 · 제92조제2항 또는 제 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

7. ~ 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6조(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) 제26조(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주기적 안전성평가) ①
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정
성평가는 원자로 안전 관련 주
요 품목의 재고관리 현황 등에
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제24조(운영허가의 취소 등) ① -
· 
· 1. ~ 5. (현행과 같음)
\ <b>_ \ _ _ _ _ _ _ _ _ _ _</b>
6 <u>제23조제3항</u>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·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3. ~ 5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
품목의 재고관리에 관한 조치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126조의2(재고관리) ① 발전용원
자로운영자는 고장 또는 결함
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
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자
로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재
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
록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고
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2(연구용원자로 등의 운 영허가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운영기술지침서,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,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, 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(제30조제2항에

2	위원	회는	제1	항에	따	<u>=</u>	재
<u>고</u>	관리 >	기준의	준수	<u></u> ο	부틭	=	확
<u>인</u>	하기	위하여	겨 핕	요ㅎ	나다고	7	인
<u>정</u>	되면	발전	용원	자로	운영	사	에
<u>대</u>	하여	필요현	한 보	고를	하	게	하-
<u></u> 거1	ナ ス	구료를	제출	출하기	에 <u>현</u>	<u>}</u>	<u>수</u>
있.	으며,	관계	공두	무원이	베게	해	당
시	설 또	는 사	업장	등	에 출	- 입	하
여	관계	] 서투	异•入	]설•	장비	اا	등
을	검사	하게	할 수	= 있	다. '	ာ	<u>경</u>
<u>우</u>	출입	] • 검/	사를	하는	- 공	'무	원
<u>은</u>	그 -	권한을	나	타내는	- 3	- 丑	를
<u> 기</u> 1	<u> </u> 기고	이를	관계	미인어	] 게	보	여
<u>주</u>	어야	한다.					

③ 제1항에 따라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2(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
(2)			
<u></u> 품질보증	계획서,	안전	관련
즈 이 프모이	게 그 귀	. 그 <b>]</b> 귀) ㅎ	ן גן

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),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(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해당한다)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③ • ④ (생 략)

제32조(건설허가·운영허가의 취소 등)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(이 하 "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"라 한다)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연구 용원자로등운영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.

1. ~ 10. (생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(건설허가 · 운영허가의 취
소 등) ①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<u>제23조제2항</u>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

#### ② (생략)

제34조(준용) ① 연구용원자로등 기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 자의 각종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·제15조의2·제15조의3·제16조·제18조·제19조·제 22조·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1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15조의4제3항·제16조제2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2조제2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3조제2항(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8조제7항(제34조·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37조제2항·제39조

11 <u>제23조제3항</u>
 ② (현행과 같음) 제34조(준용) ①
<u>제23조·제25조·제26조</u> ·제26조의2·제27조 및 제28
조 ② (현행과 같음) 제118조(벌칙)
1
<u>제23조제3항</u>

의6제2항 · 제47조제2항 · 제56 조제2항 · 제65조제2항 · 제65 조의2제2항 · 제68조의4제4항 · 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
2.·3. (생략) <u><신 설></u>

4. ~ 6. (생략)
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26조의2제1항(제34조에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)을 위반하여 재고관리기준
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재고
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
자

4. ~ 6. (현행과 같음)